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0866호, 2020.7.28. 공포, 2022.1.1. 시행) 제7조의3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 위 근무 경력에 대해 근무 기간별로 의무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평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평정 시 자격증, 근무경력 및 근무실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산점의 부여 기준 및 요건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평정 결과 및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제도 정비(안 제11조제1항 및 제32조) 등

- 1)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되, 임용권자가 해당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2) 정기평정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완료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본인의 순위를 알려주도록 하고, 수시평정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완료한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본인의 순위를 알려주도록 함.

나. 자격증 등 가산점평정 제도 정비(안 제23조)

- 1)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를 소지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을 소지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함.
- 2) 가산점을 줄 수 없는 자격증 등의 범위에 가산점 부여가 제한되는 자격증 종류의 하위 등급 자격증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 3)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 등을 소지하여 승진임용 시 가산점이 반영된 경우 해당 자격증 등의 소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산점을 줄 수 없도록 함.

다. 근무경력 가산점 제도 개편 (안 제24조)

- 1) 현행 특수지 근무 경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산점 부여 대상 경력과 기간별 부여하는 가산점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가산점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2) 종전에는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해서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경력평정을 할 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산점 평정을 할 때 근무 기간별로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되, 임용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직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간별 부여하는 가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3) 임용권자는 가산점의 부여 기준·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 기간 등 가

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평정자 및 확인자는”을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정을 하여야 하며”를 “경우”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평정자는”을 “평정자 또는 확인자”로, “결과의 내용(제3조제2항에 따른 평정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평정등급, 평정점수 및 종합평정 의견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을 “결과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수성,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특수성”으로, “평정대상 공무원이 신청하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도록”을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이의를”을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조정)신청 및 결정서를 제출하여 이의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근무성적평정 결”을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조정)신청 및 결정서를 제출하여 근무성적평정 결”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등 가산점”을 “가산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격증, 이수증 또는 언어능력검정시

험 성적확인서(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를”을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담당 직무와”를 “직무수행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격증등”을 “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

제2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자격증등”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등(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 종목의 하위 등급 자격증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격증등”을 “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5.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등

제24조의 제목 “(특수지 근무경력 가산점 등)”을 “(근무경력 가산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사 및 지도사가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

④ 임용권자는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직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1개월 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1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12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15점

⑦ 제4항에 따른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간을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근무실적이 인정되는”을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으로, “3점의 범위에서 실적”을 “실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장제4절에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임용권자는 가산점의 부여기준·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 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제27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명부는 다음”을 “다음”으로, “이를 조정하여 그 조정 결과가”를 “명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2조 전단 중 “명부의 작성이 완료되면”을 “정기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으로, “올라 있는”을 “등재된”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본인”을 “수시평정에 따라 명부작성을 완료한 경우로서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5항,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제25조의3, 제32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제2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직위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명부 순위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기평정 또는 수시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의2 및 제27조제6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 평정 대상기간: 부터 까지

성명	소속	직위	직급	현 직급 임용일	현 보직일

1. 담당 업무

2. 근무실적 평정(50점)

일련 번호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가)	주 요 실 적	평정요소			합산 점수	소계 점수
				업무난이도 (10점) (나)	완성도 (20점) (다)	적시성 (20점) (데)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추가 업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추가 업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총 점								

비고

- 1) 추가 업무는 연초에 성과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추가된 업무를 의미한다.
- 2) 각 평가요소별로 불량(①) - 미흡(②) - 보통(③) - 우수(④) - 탁월(⑤)의 5단계로 평가하되, 불량(①)은 원래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미흡(②)은 원래 계획에 미달한 경우, 보통(③)은 원래 계획을 달성한 경우, 우수(④)는 원래 계획을 초과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탁월(⑤)은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한다.
- 3) 합산점수 = ㉔+㉕+㉖, 소계점수 = ㉗×(㉔+㉕+㉖), 총점은 각 소계점수를 합산한다.

3. 직무수행능력 평정(50점)

일련 번호	평정 요소	요소별 배점	내용	평정등급	소계 점수
1	기획력	9점	•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가능한 계획을 만든다. •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일목요연한 계획을 만든다.	0 0 0 0 0 0	
2	의사 전달력	6점	•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논점이 빠지지 않도록 문서를 만든다. •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명을 한다.	0 0 0 0 0 0	
3	협상력	6점	• 상대방의 의도를 적절히 파악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득한다. •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조정을 한다.	0 0 0 0 0 0	
4	추진력	5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인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0 0 0 0 0 0	
5	신속성	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0 0 0 0 0 0	
6	팀워크	8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 조직의 성과를 중요시하며, 다른 부서 및 타인과 협업하여 일을 처리한다.	0 0 0 0 0 0	
7	성실성	5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0 0 0 0 0 0	
8	고객· 수혜자 지향	6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 수혜자(다른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이 있다. • 업무 추진 시 정책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한다.	0 0 0 0 0 0	
총 점					

비고: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①) - 거의 그렇지 않다(②) - 가끔 그렇다(③) - 자주 그렇다(④) -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한다.

4. 종합평가

종합평정 등급 및 점수	종합평정 의견	
	실적	
	능력	

평정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별지 제6호서식]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

○ 소속 : ○ 직급 : (현 직급 임용일 : 년 월 일)

○ 성명 : ○ 평정일 년 월 일

경력 평정 대상 기간	구분	직급	경력기간(연·월·일)	환산경력기간
가산 경력	총 환산경력기간 : 년 월 일(개월)			

환산경력기간	월평정점	환산개월수	평정점
년 이내			
년 초과			
가산경력			
총평정점 :			

가산점 항목	구분(예시)	가점내역	근무기간	월평정점	평정점
	직무관련 자격증 등				
	근무경력 (특수 지역, 특정 직위, 특 정 업무)				
	전문직위 근무				
	근무실적				
	기타				
총평정점 : (점)					
평정자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비고 : 평정기관을 달리하여 전보(전출)되는 경우에는 이 표를 즉시 이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 성적평정) ①·② (생략)	제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 성적평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성과계획서와 근무성적평정서에 기록된 내용과 평정대상 기간 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 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다.</u>	③ <u>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u> ----- ----- -----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라 평정을 하는 <u>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정한 후 평정을 하여야 하며, 각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을 50퍼센트, 직무수행능력을 5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무실적 또는 직무수행능력 중 어느 한 항목을 최대 70퍼센트의 비율로 조정할 수 있고, 직무</u>	⑤ ----- <u>경우</u> ----- ----- ----- ----- ----- . ----- ----- ----- ----- ----- -----

수행태도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평가할 수 있다.

⑥ · ⑦ (생략)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평정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내용(제3조제2항에 따른 평정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평정등급, 평정점수 및 종합평정 의견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 인사의 원활한 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신청하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도록 정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
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

⑥·⑦ (현행과 같음)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평정자 또는 확인자 -----

----- 결과를

--- 특수성

-----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

②

----- 별지 제
9호서식의 이의(조정)신청 및

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화
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으로서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근무성적평정 결정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6조(경력·의 평정점) ① ~ ③
(생략)

④ 교육감은 경력 평정을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등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생략)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

결정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

----- 않은

③ (현행과 같음)

④

-----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조정)신청 및 결정서를 제
출하여 근무성적평정 결---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경력의 평정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가산점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이수증 또는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를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등
3.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등의 종류 및 가산점의 부여 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격증등에 대한 총가산점은 0.75점을

-----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등(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을 -----

-----.

1. -----

----- 직무수행과 -----

2. -----

----- 자격증 -----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
<삭 제>

넘을 수 없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격증등을 소지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

1. 2. (생략)
3.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받거나 자동적으로 취득한 자격증등
4. (생략)
<신 설>

- ④ (생략)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는 다른 자격증등과 중복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다. 다만,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 ⑥ 임용권자는 자격증등의 종류 또는 가산점의 부여 기준 등을 신설·변경·폐지하는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

- ③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등(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 종목의 하위등급 자격증을 포함한다) ---.

1. 2. (현행과 같음)
3. -----
----- 자격증 -----
4. (현행과 같음)
5.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등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 <삭 제>

는 사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4조(특수지 근무경력 가산점 등) ①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 근무한 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 제2항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내에서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 시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의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제 1호의 경우에는 연구사 및 지도사가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

1. 특수지 가지역 및 나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25점

2. 특수지 다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8점

3. 특수지 라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3점

②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감은 교류 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매월 0.1점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75점을,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2.40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신 설>

<삭 제>

<삭 제>

④ 임용권자는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직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 부 장관과 협의하여 1개월 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 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 1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 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 12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15점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 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 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 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 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 제4항----- ----- ----- ----- -----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무 경력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 간은 평정대상 기간에서 제외한	⑥ ----- 제4항----- ----- ----- ----- -----				
	다. <신 설>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① 임용 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 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 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 ·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3점의 범위에서 실적 가산 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 적 가산점을 부여하려는 경우에 는 그 부여 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 개하여야 한다.			
	<신 설>				
				--.	
				⑦ 제4항에 따른 근무경력에 따 른 가산점 평정기간을 영 제31 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 간으로 한다.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① ----- ----- ----- ----- -----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 는 ----- ----- --- 실적 ----- -----.			
				<삭 제>	
				제25조의3(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 개 등)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요건 및 가산점 평 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	

	<u>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u> <u>② 임용권자는 가산점의 부여기 준·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 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및 폐지를 포 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 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 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u>		
제2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방법) ① ~ ⑤ (생 략)	제2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25조의2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 가산점은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 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 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 다.</u>	<u><삭 제></u>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u>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 에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u>	<u>다음</u>		
	<u>명부</u>		
		<u>조정하여 그 조정 결과가 해당 조정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 임용에 적용되도록 하여야</u> 한 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조 정사유 및 조정내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 인을 받아야 한다. 1. ~ 7. (생 략) ② (생 략) 제32조(명부 순위의 공개) 명부의 작성권자는 <u>명부의 작성이 완료 되면</u> 지체 없이 명부에 올라 있 는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 주어야 한다. <u>본인이 요구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u>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 용은</u> ----- ----- <u>해야</u> ----- --. ----- ----- ----- -----.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명부 순위의 공개) ----- ----- <u>정기평정에 따라 명 부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u> - ----- <u>등재된</u> - ----- ----- <u>수시평정에 따라 명부작성을 완료한 경우로 서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학교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453